호남삼육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 구분 : 추경4회

예산확정일		예산액	4,124,833,000

제1조 2018회계연도 호남삼육학교회계 제4차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4,173,480,000원에서 48,647,000원이 줄어든 4,124,833,000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18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 수당(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겸직수당
2.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